

제439회 국회 (정기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회의록
(경제재정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9월30일(수)

장 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7)
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45)
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46)
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48)
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55)
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10)

상정된 안건

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7) 3
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45) 3
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46) 3
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48) 3
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55) 3
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10) 3

(14시08분 개의)

○소위원장 배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9회 국회(정기회) 재정경제위원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경제재정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배준영 위원입니다.

오늘 제22대 국회 후반기 경제재정소위원회의 첫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경제 정책과 국가 재정에 관한 주요 법률안을 심사하는 만큼 그 결과가 우리 경제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위원님들과 지혜를 모아 안전 하나하나를 충실히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이 우리 소위원회의 첫 회의인 만큼 위원님 상호 간 인사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형 위원 하반기 법안소위 첫 회의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할 일들이 많은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배준영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수영 위원님.

이 순서대로 할까요?

○박수영 위원 김상훈 위원님 먼저 하셔야 되는데……

○소위원장 배준영 앓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박수영 위원 박수영 위원입니다.

올해 첫 경제재정소위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올해 보니까 조세소위만큼이나 중요한 법들이 많이 걸린 곳이 우리 소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소위와 재정경제위는 오랜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협의와 합의를 통해서 법안을 통과시켜 왔습니다. 이번에도 충분한 협의 그리고 합의를 통해서 좋은 법들이 많이 통과 되고 대한민국의 경제가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배준영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해서 영광이고요. 박수영 간사님이 하자는 대로 열심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배준영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배준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하여튼 합의를 기초로 해서 잘 처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배준영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태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경제재정소위 위원장을 제가 했었는데, 박수영 간사님하고…… 박수영 간사님은 조세소위 위원장을 하였고, 정말 환상의 짝꿍이었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자랑합니다.

배준영 위원님이 소위원장을 맡으셨고, 오기형 위원님…… 두 분도 참 잘 맞으실 것 같아 가지고 기대가 큼니다. 최선을 다해서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배준영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준석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석 위원 저는 가장 치열한 과방위에서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즘 참 느긋합니다, 상임위에서. 이렇게 기분 좋은 마음으로 계속 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시면 따라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배준영 감사합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 모시고 영광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의 진행은 상정한 법률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 발언 시에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 배석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발언해 주시고 발언 전에 소속·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7)
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45)
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46)
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48)
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55)
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10)

(14시12분)

○소위원장 배준영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6건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유인규 전문위원께서 동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이게 1·2항을 먼저 하고 진행하고 3·4항을 하고 진행하고,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거지요?

○전문위원 유인규 예,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배준영 그러면 1·2항을 먼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인규 오늘 심사하실 6건의 법률안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의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 또는 특례 유형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자료 1쪽에 있는 국유재산특례제도와 관련되는 법체계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특례와 관련된 법률은 국유재산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그리고 개별법들입니다.

먼저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의 기간, 사용료·대부료 징수, 양여를 할 수 있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국유재산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장기 사용허가·대부를 하거나 사용료·대부료 등을 감면하거나 양여를 하는 것을 국유재산특례라고 정의하고 개별법에서 무분별하게 국유재산특례를 정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동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는 경우에만 국유재산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법들, 구체적으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로 규정된 법률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개별법들이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별법에서 국유재산특례를 신설하려는 경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의 개정이 이루어져 해당 법률이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로 규정되어야 국유재산특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및 운용 원칙으로 특례목적의 공익 부합 여부 그리고 예산지원 등 다른 수단에 비해 효과적인지 여부, 특례요건의 명확성과 구체성, 존속기간의 적절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 4쪽 제1항과 2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제1항과 제2항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한 국유재산특례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각각 공공보건의료대학 및 국립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 및 양여 특례 효과 발생을 위해 그 근거를 별표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양여 및 사용료 등의 감면 특례를 규정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오는 1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률을 약칭으로 ‘국립의전원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래 표에 보시면 국립의전원법 제15조에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입법례를 살펴보면 한국과학기술원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등 국립 교육·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다수의 법률에서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감면, 양여 등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검토의견입니다.

국유재산특례 신설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법률의 제명이 이수진 의원안대로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수진 의원안과 같이 규정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먼저 특례 목적의 공익성을 보면 공공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그 목적의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다음 효과성을 보면 임차료 등 국가의 출연금 지출을 축소하고 정부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특례 요건을 보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명확성과 구체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존속기한은 이수진 의원안에서 203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례제한법에서는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라는 원칙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존속기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1년 단축하자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배준영 다음,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재정부2차관입니다.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은 지금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셨듯이 기한을 특례법에 규정된 것처럼 양여 같은 경우는 장기도 그래서 맥시мум이 지금 8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법에는 35년까지 돼 있지만 내년부터 8년 하면 34년까지니까 이것만 34년으로 기한만 수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배준영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영 위원님.

○박수영 위원 전문위원님, 박희승 의원님이 내신 공공보건의료대학 이것은 새로 만드는 국립의전원법 안에 포섭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유인규 예, 그렇습니다.

○박수영 위원 그럼 15조에 ‘국립의학전문대학원’만 돼 있는데 앞에 어디 개념 규정에 서 용어 정의하면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안에 공공보건의료대학도 들어 있는 것입니까? 15조의 조문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만 나와 있길래 공공보건의료대학은 어디로 갔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전문위원 유인규 두 안을 통합해서 대안을 만들면서 공공보건의료대학이라는 것은 포함이 되지 않고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박수영 위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만 남아 있고 공공보건의료대학원은 없어졌습니까?

○전문위원 유인규 예.

○박수영 위원 그래요?

○김상훈 위원 존속기한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박수영 위원 존속기한 정부안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소위원장 배준영 존속기한 정부안에 동의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수영 위원 1년씩 줄이자는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배준영 8년의 기준을 하면 34년이 된다는 얘가지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특례법에.

○소위원장 배준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안은 일단 나와 있는 대로 통과하는 걸로 하고 3안, 4안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유인규 제3항과 제4항은 철도 유희부지 활용에 대한 국유재산특례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철도부지 활용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 장기 사용허가 등 및 양여 특례 효과 발생을 위해 그 근거를 별표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철도 유희부지 활용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 허가 등 특례를 규정한 철도 유희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국토위에서 의결되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이유는 우리 위원회에서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해서 법사위에 보내면 같이 심사하겠다고 해서 지금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래 관련 조문 박스를 보시면 철도 유희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철도 유희부지를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고 5항에서 ‘대부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런 특례들이 들어 있습니다.

검토의견 부분입니다.

국유재산특례 신설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특례 근거 법률 명칭하고 특례유형 부분들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잠시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례 목적의 공익성을 보면 지자체가 철도 유희부지를 교육·문화·관광 등의 용도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지자체 주민의 생활 수준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효과성을 보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수행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행 국유재산법에 따라 지자체가 공용·공공용·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사용하는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이미 사용료 등의 감면과 계약의 계속 갱신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다만 이 특례를 통해서 대부·사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조금 늘어나고 또 교육·문화·관광 등의 사업 중에 공용·공공용·비영리 공익사업용 외의 용도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특례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존속기한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려해서 설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9쪽에 있는 저희 수정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률명이 국토위 대안에서 ‘철도 유희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 법률명을 사용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특례를 규정한 법조문이 10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조를 인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위 대안에서 특례유형 중에서 양여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유형 중에서 양여는 제외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존속기한은 김석기 의원안인 경우에 2036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정하면 한 10년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법률에서는 ‘장기 사용허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법률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례유형에 보면 장기 사용허가뿐만 아니라 사용료 등의 감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한 2년 정도 단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배준영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전문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똑같이 기한만 10년까지로 법상 돼 있는데 우리 특별법상에는 8년이 맥시멈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기한만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배준영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박수영 위원 전문위원님 또는 차관님, 현행 국유재산법에도 규정이 있고 이걸로 감면과 갱신이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개정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문위원 유인규 현행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기간이 5년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특례에서는 물론 10년 이내로 바뀌서 계약기간이 지나면 갱신을 할 수가 있는데 갱신주기가 5년 단위에서 10년 단위로 조금 늘어나는 혜택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행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공용·공공용·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사용료 등의 감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자체가 철도 유희부지를 가지고 교육·문화·관광 등의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그 경우에 혹시 이 용도가 아닌 용도에 사용할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 특례를 부여하게 되면.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특례를 신설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파악을 하였습니다.

○박수영 위원 차관님, 그러면 국유재산법을 아예 고치는 게 나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다른 수요들이 있어서 특례법을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런 게 자꾸 올라오잖아요. 해 보면 계속 올라오는데 그럴 바에 차라리 그 사업을 5년짜리를 8년으로 고치고, 용도도 공용, 공공용, 비영리 이것만 할 게 아니라 관광, 교육 등등을 해서 ‘등’을 하나 넣어서 바꿔 놓으면 특례법 매년 개정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용인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담당 국장이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배준영 예, 말씀하십시오.

○재정경제부국유재산정책관 고종안 국유재산정책관 고종안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이 국유재산법의 해석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약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국유재산법상 제34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행령 제32조 5항과 6항에서 그 사용료를 면제해서 지자체가 사용할 경우에는 취득 계획을 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사용허가 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공공용으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제약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여기서 그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를 사용료를 내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에 대한 사용료는 2.5%입니다. 2.5%를 내면서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계속 갱신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행 국유재산법으로는 이 철도 유희부지 활성화 이 법에 따른, 법과 같은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특별법이 유효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영 위원 차관님, 그러면 같은, 지금 국회에 오셔서 기존의 법이, 현행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례법 해 보면 계속 올라오거든요.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계속 올라오는데 그럴 바에야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거를 좀 더 광범위하게 인정해 주는 것이 정부의 방향이라면 특례법이 아니라 국유재산법 자체를 개정해 놓으면 일일이 특례법 개정안으로 올라올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을 좀 더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논의는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재경부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일 이제 법을 고쳐 가지고 그걸 더 폭넓게 하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면 한번 검토해 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거는 현재 이 법상에서 된 문제는 여기서 어떻게 그걸 결정하기는 힘든 거고

요. 하여간 저희가 그 말씀은 들어서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배준영 위원님들.

○김상훈 위원 지금 임미애·김석기 의원안이, 발의한 법안명이 ‘폐철도부지 활용 촉진 등’인데 이게 국토위에서 의결된 법안명이 철도 유희부지……

○전문위원 유인규 예, 그렇습니다.

○김상훈 위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존속기한은 역시 같은 8년으로 하고 줄이는 겁니까, 36에서 34로?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그러니까 이게 법안에는 10년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 특별법 상에는 맥시멈 8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만 아까하고 동일하게 8년으로 바꾼 겁니다.

○김상훈 위원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소위원장 배준영 제가 질문을 하겠는데, 이게 폐철도부지를 포함하는 개념이 철도 유희부지인데 이 철도 유희부지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유희부지가 어떤 건지?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폐철도 유희부지는 철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고 철도 유희부지는 철도를 사용하지만 그 유희적으로 쓸 수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폐철도부지보다는 철도 유희부지가 조금 약간 넓은 개념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배준영 그 정도는 저희가 이해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전문위원이 설명하신 대로 또 정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인규 자료 10쪽입니다.

제5항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한 국유재산특례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 특례 효과 발생을 위해 그 근거를 별표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대부·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 19조를 보시면 국유재산특례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 11페이지를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이 법률은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관련해서 그 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감면 특례를 규정한 것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10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특례 신설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특례 목적의 공익성을 보면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관련 시설의 사후활용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그 목적의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다음, 특례 인정의 효과성을 보면 현재 사업면적 121만㎡ 중 국유지가 약 88만㎡ 수준으로 조직위원회에 대하여 국유재산 사용료 등을 면제함으로써 박람회 준비 등 과정에서

조직위원회의 임차료 등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그 특례 요건을 보면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에서 조직위원회의 업무범위와 수행할 수 있는 수익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특례 요건의 명확성과 구체성은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존속기한에 대해서 살펴보면 2029년 12월 31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그 유효기간이 2029년 12월 31일로 정해진 한시법입니다. 따라서 그 한시법이 유효기간 종료일과 이 존속기한을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저희가 12쪽에 수정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이 개정안에서는 특례를 규정한 제19조제1항을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항까지 적시할 필요는 없고, 기존의 입법례 항까지는 적시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19조 2항의 경우에도 특례와 관련된 내용이어서 굳이 2항을 제외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배준영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내용을 수용하겠습니다.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배준영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수영 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그게 지금 8년을 하지 않습니까?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여기 맥시멈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수영 위원 예, 맥시멈 8년인데 정원박람회를 한다든지 순간적으로 될 하는 거는 8년이면 충분하고 3년 해도 될 거고 그럴 수가 있는데, 앞에 우리가 의전원 부지 하지 않았습니까?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박수영 위원 의전원에서 쓰는 거를 굳이 8년으로 이렇게 제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의전원 한번 쓰게 되면 50년, 100년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그렇게 갈 수도……

○박수영 위원 그렇게 8년 지나면 또 여기 올라와서 또 연장해야 되고 이런 건가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행법 그게……

○박수영 위원 그거 왜 그렇게 하는 거지요?

○소위원장 배준영 그 8년이라는 숫자가 갖는 의미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정경제부국유재산정책관 고종안 국유재산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2년도 국회에서 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기간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를 하였고요. 그때 당시 어떤 결론이 있었냐면 양여와 장기사용의 경우에는 8년을 한도로 하자 그리고 사용료 감면은 5년을 한도로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회 논의 결과를 존중을 해서 지금까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상의 그 사용기간에 관해서는 그 원칙을 계속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배준영 물론 국회에서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요. 그런데 8년, 5년을 하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저희가 찾아보면 알겠지만 혹시…… 물어보시니까.

직접 말씀하세요.

○재정경제부국유재산조정과장 마용재 국유재산조정과장 마용재입니다.

22년도에 특례가 계속 장기화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때 특례 일몰제가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일몰 하는데 사용료 감면은 5년이고 장기사용허가는 8년으로 해 가지고 그때 특례 존치 평가를 5년, 8년마다 하는 걸로 그때 결론을 냈습니다.

○정태호 위원 왜 8년이나 이거지요.

○재정경제부국유재산조정과장 마용재 그때 논의했을 때 장기사용료 감면은……

○소위원장 배준영 10년은 좀 길다 이거구나.

○정태호 위원 7년 할 수도 있는데 왜 8년이나 이거지요.

○재정경제부국유재산조정과장 마용재 그것까지는 저희가……

○소위원장 배준영 알겠습니다.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너무 장기화돼서 문제가 생기니까……

○소위원장 배준영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다시 장기로 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게 되는데……

○소위원장 배준영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전문위원과 정부에서 정리한 대로 일단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6번.

○전문위원 유인규 자료 13쪽이 되겠습니다.

제6항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사업자에 대한 국유재산특례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사업자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 특례 효과 발생을 위해 그 근거를 별표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특례를 신설하는 것이라기보다 기존의 장기사용허가 등의 특례가 있는 것에서 새로이 사용료 등의 감면에 대한 특례도 추가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제26조제5항이 9월 15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박스 안에 보시면 제26조제5항에 보시면 그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유재산특례 신설 요건은 갖추고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그 신재생에너지법이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 법률 명칭을 변경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정의견을 저희가 제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례 목적의 공익성을 보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효과성을 보면 재생에너지 설비는 초기 투자비와 공간 확보에 대한 부담이 크고 장기에 걸쳐 투자비용 회수가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어 임대료 부담이 사업의 초기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료 등의 감면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려는 자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는 효과 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재생에너지법에 재생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또 임대료 경감으로 인해서 재정지원 규모 축소 등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14쪽에 있는 특례 요건을 보면 국가가 국유자산을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특례 요건의 명확성과 구체성은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존속기한은 현행 장기사용허가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029년 12월 31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15쪽에 저희 수정의견을 잠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별표의 112조를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2조에서 특례유형에 ‘장기사용허가 등’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사용료 등의 감면 및’이라고 해서 사용료 등의 감면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현행 113호에 보시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라는 법률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법률이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113조도 아울러 그 법률명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배준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배준영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박수영 위원님.

○박수영 위원 차관님, 정부에서 낸 세법 개정안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 규정, 경감 규정이 있던 걸 3분의 2를 없앴어요. 그리고 재정지원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밝혔지 않습니까?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박수영 위원 그러면 그 태도하고 지금 이 법안에 대한 태도가 수미일관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감면 조항을 넣겠다는 거예요. 재정지원으로 전부 전환할 테니까 조특은 전부 없애자 해서 3분의 2 정도가 날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재정지원은 돼 있는데 플러스 감면하겠다는 걸 추가로 넣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박수영 위원 1차관 소관과 2차관 소관이 이렇게 다른니까?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잘 아시겠지만 애초 취지는 제가 자세하게, 테크니컬하게 완전히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하여간 취지 자체는 조세를 하면 못 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역진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조금으로 전환을 해서 조세, 세금 면제를 못 받는 사람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는 게 사실 저희 기본 그거고요.

그래서 아마 이 효과를 거꾸로 보면, 과연 그게 얼마나 재정지원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결과를 보시면 조세 감면보다 더 많이 될 수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수영 위원 글썽요, 감면 플러스 재정지원 이 두 가지로 가는 게 안 맞다는 게 재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는데 이것은 두 가지를 같이 주겠다고 하니 지금까지 입장하고는 좀 다르다는 점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박수영 위원 저는 반대입니다. 단일화해 오세요.

○소위원장 배준영 김영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김영환 위원 박수영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아직 조특법상에 무수히 많은 조세특례가 있지요. 조세지출이 내년에도 100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조세감면으로써 이를 수 있는 정책 효과하고 조세지출보다는 재정지출로 효과를 더 누리는, 더 효율적인 측면이 있는 것도 있는 거지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이를테면 사업자 조세감면제도는 여전히 조세지출제도의 메인으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들, 예를 들면 박수영 위원님이 좋아하시는 투자 관련해서 조세지출이 있고 R&D 그다음에 고용 세액공제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조금 정책으로 바꾸자는 얘기고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사업자에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국유 재산을 사용료 감면 등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와 그다음에 또 다른 차원에서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정책은 좀 다른 차원으로 재정 효과를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활성화 차원에서 너그럽게 합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그리고 이게 모든 게 바뀐 게 아니라고 R&D라든지 투자 관련 세액공제 이런 것들은 기업은 그대로 다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사항에 있어서, 조금 조그만 사항에 있어서 그런 게 있으신 거니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영 위원 속기록에 들어가야 되니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자면 기업의 R&D라든지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뭘 주장했나 하면 정부가 이 기업들에 대한 직접 보조금도 주자고 주장을 했는데 보조금을 줄 수 없으니 세액공제를 하자고 해서 세액공제율이 올라간 겁니다. 즉 두 가지를 다 주는 게 별로 없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왜 이것은 두 가지를 다 주느냐 이게 제 질문의 핵심인데 차관님이 자꾸 다른 쪽으로 도망가시는데 재정지원도 하면서 감면도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정부 방침에, 흐름에 맞지 않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재생에너지에 대한 재정지원도 하면서 사용료 감면도 해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환 위원 R&D 세액공제 있지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김영환 위원 과기부에서도 R&D 예산 지원 정책도 있지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그것도 같이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것하고 마찬가지로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좁은 걸 가지고 넓은 것까

지 선택을 하게 되면 저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수영 위원님.

(웃음소리)

이상입니다.

○박수영 위원 속기록에 남기겠다는 거지요.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저도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소위원장 배준영 그런데 저는 박수영 위원님이 적절한 지적을 하셨다고 보는 게 지금 정부에서 115가지 조세특례를 정리하면서 어떤 것은 일몰시키거나 감면하거나 폐지하거나 어떤 것은 영구적으로 하거나 이렇게 다 조정을 한다는 게 사실은 개별적인 지원을 통해서 더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정부가, 공공의 목적은 있지만 공공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런 국유재산특례법에 대해서 사업자한테 지원을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아 가지고……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사업자에게 지원을 하는 문제는 재생에너지 자체가 일종의 외부성을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쪽 차원에서 정부의 지원이 있는 것들은 당연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배준영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1항부터 5항까지는 이견이 없기 때문에 신속한 법안 통과와 논의의 진전을 위해서 진행을 하고 6항에 대해서는 계속심사를 하는 게 어떨까요?

○오기형 위원 그러면 잠깐 저도……

○소위원장 배준영 예.

○오기형 위원 이것은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돼서 쟁점이 없는 걸로 올렸는데 여기서 좀 그래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셨으면 싶고요.

신재생에너지든 원자력이든 간에 지금 에너지 공급에 대한 것들이 중요하고 약간 공공적 성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순한 비즈니스 사업자와 좀 다르다, 공공적 성격이 있는 거니까 그 점에서 어떤 정도의 지원이나 또는 혜택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그 판단을 하는 중에 수단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어서 전체 앞에서 이야기했던 1번부터 5번까지 하는 것에 갖고 있는 공공적인 성격과 완전히 반대되는 결정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번 좀 더 재고를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김영환 위원 이게 큰 것도 아니잖아요, 박수영 위원님.

○박수영 위원 한 번 더 논의를 하세요.

○소위원장 배준영 그러면 의견들이 조금 다르시니까 일단은 논의는 논의대로 빨리 진행하고 남은 거는 남은 것대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칙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유인규 16쪽, 부칙에 대해서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칙은 각각의 개정안에 전부 다양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개별법이 이미 시행 중인 특례의 경우에는 시행일을 공포일로 규정하고 그 외에 개별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거나 시행 예정인 경우에는 그 개별법의 시행일에 맞춰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배준영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합의되지 않은 관계로 계속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5건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자구 등에 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허장 재정경제부제2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유인규 전문위원 등 위원회 직원 그리고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김상훈 김영환 박수영 배준영 오기형 이준석 정태호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인규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재정경제부

제2차관 허장

기획조정실장 김후진

국유재산정책관 고종안